(별첨자료)

정 관 일 부 변 경 (안)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 이유
제20조(소집지)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	제20조(소집지와 개최방식) ① (현행과 같음)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만 총회를 개최한다	- 코스닥협회 표준정관에 맞게 조항 정비
제26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	제26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	- 대리권 증명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하는 상법 제36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함
제29조(이사의 수) 이 회사의 이사는3인 이상으로 하며 필요에 의해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.	제29조(이사의 수) 이 회사의 이사는3인 이상으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,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-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내 인원수 비율을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함
제32조(대표이사 등의 선임)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, 대표이사,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.	제32조(대표이사 등의 선임)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, 부회장, 대표이사,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.	- 부회장 직위 추가
<신설>	제33조의 3(이사의 의무)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,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.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④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	- 코스닥협회 표준정관에 맞게 조항 신설
제37조의 2(이사의 책임감경)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1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6배(사외이사는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. 다만,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,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37조의 2(이사의 책임감경)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1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6배(독립이사는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. 다만,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,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-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함

제39조의 4(감사의 직무) ①,②,③ (생략)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. ⑤,⑥,⑦ (생략)	제39조의 4(감사의 직무) ①,②,③(현행과 같음)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7조의2의 규정 및 제33조의 3 제④항 규정을 준용한다. ⑤,⑥,⑦ (현행과 같음))	- 코스닥협회 표준정관에 맞게 조항 개정
제45조(분기배당)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년도 개시일부터3월.6월 및9월의 말일(이하“분기배당기준일”이라 한다)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이사회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45일 내에 하여야 한다. ③,④ (생략)	제45조(분기배당)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,6개월 및 9개월 경과 후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2에 따라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.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③,④ (현행과 같음)	- 코스닥협회 표준정관에 맞게 조항 개정